

**2018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08.



新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New DAEGU BUSAN Expressway Co.,Ltd

안 전 도 로 팀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의 현재 사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2) 정기점검(육안점검)
-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4) 보수 · 보강방안 제시 (공법, 우선순위 및 시기)
-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6)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7) 특이사항 발생 시, 추가 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보고서 및 현황 작성 포함)
- 8) 3종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FMS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및 승인

나. 점검 대상시설물

“붙임1 점검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07일까지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 계약자(이하, “계약대상자”라 칭한다)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 당사(이하, “발주처”라 칭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1)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
- 2)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3)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자 자격현황
- 4) 과업수행을 위한 시험기구의 검교정 현황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 5)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일부터 업무일지 및 공정보고서를 작성·서명하여 발주처(과업수행 관리담당자)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 : 매일 09시 까지

2) 주간공정보고서 : 매주 금요일 (별도양식) 16시까지

※ 금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전일 16시까지

3) 월간공정보고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6시까지

※ 월간공정보고서 제출 시, 주간공정보고서 함께 제출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바.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재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용역성과의 일부로 인용 또는 활용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자. “과업수행자”는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용역준공 후 30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 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 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 취소 등 발주처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가. 과업의 수행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검토

- ① 본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 ② 정밀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
- ③ 시설물의 안전점검 자료 및 보수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 및 면밀한 조사 분석 시행

2) 정기점검(육안점검)

- ① 육안점검
 - 시설물 부재별 결함 확인
 - 결함부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①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및 기록
- ② 외관상태를 평가하여 평가기초자료를 검토 및 분석

4) 보수 · 보강방안 제시 (공법, 우선순위 및 시기)

-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시설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보수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적정공법, 소요예산 등)을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점검결과 정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본 과업 수행 내용 결과를 정리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3종 및 기타종 시설물에 대한 우리회사 요구자료 작성·제출·입력 및 FMS에 신규 등재된 3종 시설물에 대하여도 1·2종과 마찬가지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 가. 본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계 제출 시 첨부 하여야 한다.
-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다.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라. 과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마.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 가. 과업 수행 전에 책임기술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그 날의 점검 항목과 점검방법 및 그에 따른 불안전 요인, 대처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고속도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사전협의(진단일정, 교통제한 등)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교통차단 시(갓길포함) 작업 전일 16:00시 까지 발주처에 교통 차단 계획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은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마. 현장 작업 시에는 작업모, 안전화 및 필요한 경우 보안경, 개인용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가. 본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결함부, 육안점검 전경 및 문제점 등의 점검전반에 관하여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시설물의 결함부에 대하여 추가자료(보고자료 작성, 분석자료 작성 등) 및 비파괴시험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용역기간 중 외부점검 등으로 인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시는 과업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라. 교량 굴절차 사용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차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마. 터널 내부(고소차) 점검은 발주처 교통차단 일정 및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야간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다.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작성

- 1) 성과품 작성 시 언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 2)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3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외관조사망도의 경우, “A3” 규격의 크기로 작성한다.

나. 납품목록

구 분	제출도서	규 격	부 수	비 고
성과품 목록	보고서	A4	각2부	필요시 추가제출
	외관조사망도(CAD 도면작성)	A3	각2부	
	외관조사 사진첩	A4	각2부	
	보고서CD	CD	각2매	
	외장하드(전체수록)	1TB	6개	

다. 기타 관리대장 작성 및 기록관리

- 1) 신축이음장치 관리대장
- 2) 교량받침관리대장
- 3) 암거관리대장
- 4) 시설물관리대장